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 -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김 해 경**

국 | 문 | 요 | 약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동법상의 법적 문제점 및 현실적 실효성에 관한 다툼이 진행 중이다. 즉, 제정 이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법적 성격, 구성요건의 명확성, 의무범위의 구체성, 처벌의 과중문제 등 끊임없는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다스간의 중대재해사고가 감소하였다면 법의 제정 목적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니와 반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기도 모호하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보다 15년이나 앞서 기업과 실치사법을 시행하여 온 영국에서조차 동법의 입법목적의 실현여부에 대하여는 비판이 더욱 크다.

여기에서는 우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과 영국의 중대재해 발생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행위주체로서 기업, 사회사와 모회사의 책임귀속 문제, 단일 사고에 대한 다수 기업의 처벌가능성 등에 관한 영국의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 해석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이 형사특별법이 아닌 안전·보건에 관한 행정법이라는 점, 행위주체로서 기업의 대표자 해석, 양벌규정의 해석문제와 50인 미만 사업장예의 확대적용 문제 등을 영국사례와 비교하여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규범의 범위를 확장시키지만, 예측불가능한 위험요소의 증대는 관련 법으로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범위는 넓어지고, 안전확충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경제적 규모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헌법이 근로를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유지는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국가 중 국가산재사망률 1위의 민낯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지막 희망카드라면, 해당 카드가 공수표가

* 본 논문은 202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한중해사법연구센터·경찰청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발표에서 토론을 맡아주신 강우예 교수, 도규엽 교수, 경찰청 박근국 경감님 및 심사를 통해 조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법학박사

되지 않도록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12.31.4.63>.

- ❖ 주제어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법인처벌, 양벌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기업과실치사법

I. 들어가며

많은 진통과 논란을 겪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약칭)은 제정 과정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¹⁾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²⁾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³⁾ 등 관련 다수의 의안발의안들이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 발의로 반영폐기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해석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등이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다. 또한 3년 유예에 관하여도 비판은 여전하다. 지난 2년간 시행 경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요구되는 이행의무가 완전하게 확립되고, 그와 같은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법 제정이전보다 중대재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음이 확인될 때에만, 비로소 그 확립된 구체적 법체계와 시행 경과를 바탕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2년간 중대재해 발생규모는 그리 형편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는 점은,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나 구성요건 자체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확실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나아가 동법의 직접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함을 지나쳐서 대체로 소극적이라는 평이 적지 않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동법의 구성요건상의 행위주체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 위배 문제,⁴⁾ 처벌양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위배 문제,⁵⁾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약칭)과의 관계 설정 문제⁶⁾ 등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1) 강은미 의원 등 14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2100377]”.

2) 임이자 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2106019]”.

3) 박범계 의원 등 12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2106436]”.

4) 행위주체의 명확성 요청에 관하여는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61면; 송인택 외 4인, 중대재해처벌법해설과 대응, 박영사, 2022, 55면;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111면; 조흥학,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고소”, 노동법논총 제5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12, 3면 이하 등.

5) 임우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20/12/2, 61면 이하.

6) 박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처벌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56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12, 103면 이하; 오대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법조 제71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법이 본질적으로 형사특별법⁷⁾인지 행정법⁸⁾인지 조차도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들과 적용에 있어서 치열한 논쟁들은 낫설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선 2007년 영국이 “기업과실치사법(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하고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부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역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담당자나 경영진의 부주의 및 범의를 성립요건으로 하여 산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지만 그 자체로서 기업의 안전의무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서 기업에 대한 과실증명으로 소위 ‘상한 없는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정비한 것이다. 또한 양형기준에 있어서 종합적·망라적 방식이 아닌 우리와 동일하게 점진적·개별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이미 최초 정비 이후 2016년의 재정비를 통해 상한 없는 벌금의 구체적인 양형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⁹⁾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관하여, 영국의 그간의 기업과실치사법의 해석과 양형 및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전후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별 분석을 살펴보고(Ⅱ)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Ⅲ). 또한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치사상죄의 법적 성격과 행위 주체 문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및 동법의 확대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Ⅳ).

권 제4호, 법조협회, 2022/8, 335면 이하 참조.

7) 박채은, 앞의 논문, 117면. 김재윤,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 형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2/9, 200면은 동법의 성격을 “보다 강력한 국가형벌권을 통한 문제해결”의 시도라고 보아 형사특별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8) 오대영, 앞의 논문, 327면.

9) 자세한 내용은 김혜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6, 33면 이하 참조.

II. 영국의 중대재해발생 현황

1. 중대재해 발생 경과

다음은 1974년부터 지난 40년간 영국의 연간 중대재해 발생 규모이다.¹⁰⁾

년도	피해규모	년도	피해규모	년도	피해규모
1974	651	1991/92	368	2008/09	179
1975	620	1992/93	339	2009/10	147
1976	586	1993/94	296	2010/11	175
1977	524	1994/95	272	2011/12	171
1978	499	1995/96	258	2012/13	150
1979	492	1996/97	287	2013/14	136
1980	440	1997/98	274	2014/15	142
1981	495	1998/99	253	2015/16	147
1982	520	1999/2000	220	2016/17	135
1983	513	2000/01	292	2017/18	141
1984	498	2001/02	251	2018/19	147
1985	471	2002/03	227	2019/20	111
1986/87	407	2003/04	236	2020/21	142
1987/88	445	2004/05	223	2021/22	123
1988/89	609	2005/06	217	2022/23	135
1989/90	475	2006/07	247		
1990/91	433	2007/08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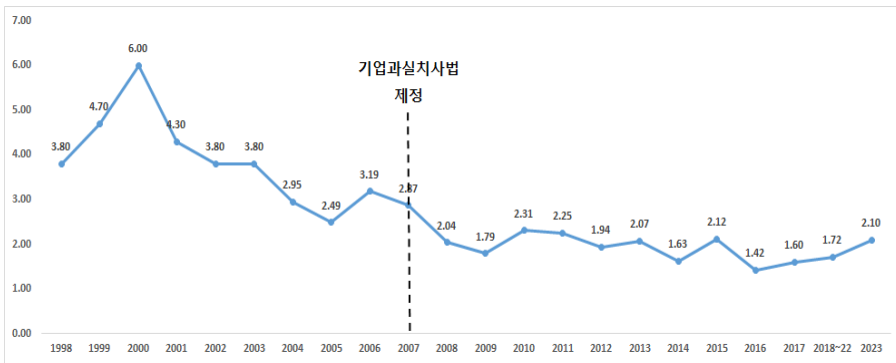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500명을 상회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1991년까지 항상적으로 400명 대를 유지하면서 1980년대 평균적으로 매년 486명 정도의 사망자를 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망자 수가 200명대로 감소세를 유지하여, 평균적으로 매년 285명 정도의 사망자를 넘으로써 평균 100명 정도의 사망자

10) Number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in Great Britain from 1974 to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2272/fatal-injuries-at-work-great-britain-by-employment-y-on-y/>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이후 2021년부터 2023년을 추가하여 재정리한 표이다.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며 2000/01년부터 2009/10년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약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1990년대보다 매년 평균 60명 정도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여 피해규모가 전년 대비 76.8%로 감소되어 건수 자체도 100건 대로 진입한 부분이다. 2007/08년 233건에서 그 다음 해에는 147건, 그리고 그 이후 약 15년간 소폭의 증감을 지속하다가 2019/20년, 즉 코로나-19 시기 바로 직전에는 111명으로 2007/08년 대비 47.6%로 절반 이상 감소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효과인가 여부에 대하여서는, 영국 내에서도 논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연간 산업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항상적으로 많은 건설 산업 영역을 기준으로 1998년도부터 2023년까지 근로자 10만 명당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정 전 10년간에는 연평균 2.6% 감소율을 보였다가 제정 이후 15년간, 즉 2008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약 3.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중대재해 감소폭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정 이후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약 2명 안팎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2018-2022년까지 평균은 1.72로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후의 통상적인 평균에 가까웠으나, 2022/23년에는 다시 2.10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정 전후의 법률 시행에 의한 영향으로

감소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중대재해 발생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감소세의 자연적 결과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¹¹⁾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사고에 대하여 산업보건안전법(HSWA)와 기업과실치사법 적용이 이분화되어 있어서, 실제 기소가 어떻게 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 비율은 차이가 있게 된다. 실제 산업재해발생과 기소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대하여 대부분은 산재영역으로 분류하여 실제로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즉시 경찰의 수사권이 보건안전청으로 이관되고 산업보건안전법이 적용된다.¹²⁾

2. 최근 중대재해 발생현황

가. 영국의 2022/23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조사대상 사고발생기간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로 변경하였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135건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33명으로 2021/22년 대비 유사한 비율이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16-59세 사이로 99명에 달하였다.¹³⁾ 사고원인으로는 낙상이 가장 많은 40건이었고, 물체나 추락물 등예의 충격이 29건, 차량접촉사고가 20건이었고 그 외에 무너지는 것 등예의 갑힘 사고 12건, 작동하는 기계에 의한 접촉사고 9건 등이었다.¹⁴⁾ 낙상의 경우 2018년부터 5년 평균보다 5건 증가하였으나 차량접촉사고는 오히려 5건 감소하였다. 반면 추락물 등예의 충격은 평균보다 가장 많은 9건이 증가하였고, 그 외에는 평균과 거의 유사한

11) Jocelyn Ledward, Corporate manslaughter: more and larger companies are due to pay the penalty, 1-2면 참조.

https://www.qebholliswhiteman.co.uk/cms/document/nfdc_corporate_manslaughter.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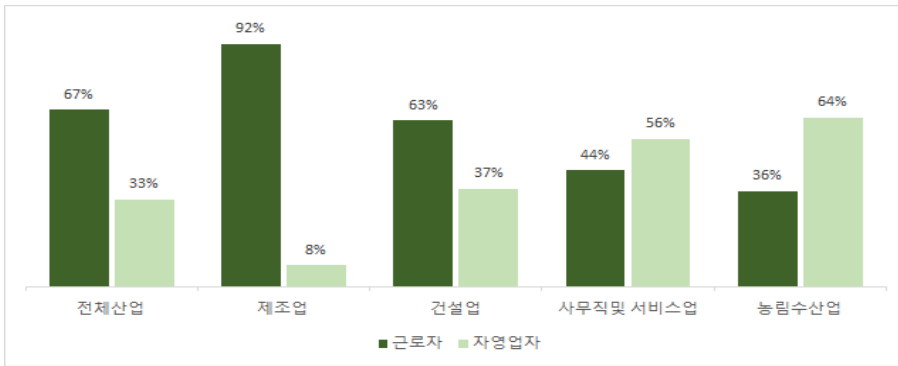
12) 시사저널, “영국 현지 취재: 기업살인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수 있다?... 팩트체크 5문5답”, 시사저널 1580호, 2020/1/2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716>.

13) 이하의 통계내용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이 발간한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2023, Annual statistics, HSE, 2023/7/6을 인용하였다.

14)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2023, Annual statistics, HSE, 2023/7/6,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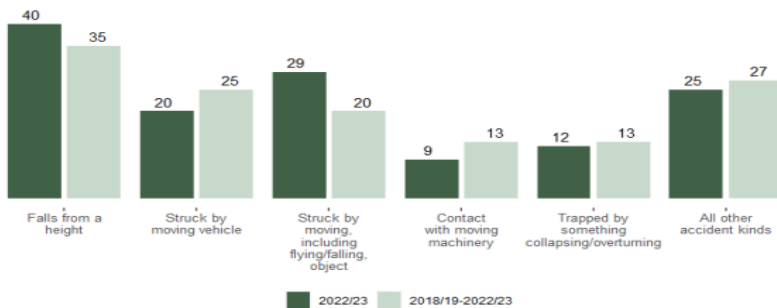
건수를 보였다.¹⁵⁾ 중대재해 비율로는 사망자의 30%가 낙상 또는 추락에 의한 사고였으며, 차량접촉사망사고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였고, 추락물 등에의 충격은 약 21% 정도에 이른다.

영국은 중대재해 통계에 있어서 자영업자(사업주, self-employed)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는 바, 전체 사업장 규모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15%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율은 33%에 이르고 있다.¹⁶⁾



산업별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치명상 비중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노동인구의 상대적 구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8/19년도부터 2022/23년도까지 5년간 농림수산

1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2023, Annual statistics, 11면.

16)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2023, Annual statistics, 14면. 표의 출처도 또한 같다.

업과 사무/서비스직에서 중대재해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가 각각 64%와 56%로 모두 높았으며, 이는 건설업 37% 및 제조업 8%와 대조된다. 다만, 업종별로 자영업자의 중대재해 비율의 차이는 근로자 치명상 비율과의 상관성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5년간 자영업자 중대재해율은 고용율의 약 3배 수준으로 업종별 차이를 보였으며, 자영업자의 증가율은 특히 농림수산업과 사무/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자영업자의 치명상률은 근로자의 각 2배, 4배 정도이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양자 간의 치명율의 격차가 더욱 크다.

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변화

영국에서는 2021/22년 노동시장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에의 영향 여부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¹⁷⁾ 이는 코로나 발생 원년인 2020/21에 142명으로 그 전해보다 30여명이 증가하였다가 2021/22년에는 123명으로 다시 감소된 통계가 코로나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노동시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감소하는 동안 여전한 혼란과 보건 및 안전통계에의 지속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고, 산업재해로 인한 근무손실일수 및 손실비용을 재집계하도록 하였던 바 이는 주로 손실된 산정 과정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의 일시 변경때문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 범죄조사 업무 관련 통계의 중단이 계속되어 마지막 통계자료가 2019/20년도를 끝으로 유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0/21년도와 2021/22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도입된 일시해고와 같은 임시 고용제도로 인하여 단기 근로자 수가 예년보다 증가하였지만, 건강악화율의 고용분모는 개념적으로 부상율과 다르므로, 일시적 해고로 인한 근로자 비율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사망률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19환자 사망진단서에 직업성 질병 기록 누락으로 인한 전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코로나 19 감염자로서 직업성 질병 보유자는 그렇지 않는 자에 비해 조기사망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¹⁸⁾ 즉, 2020/21년도의 중대재해 사망건수가 전년도 111명에서 142명으

17) HSE, Technical report,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 the interpretation of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2021/22, HSE, 2022/11/23 발행.

18) HSE, Technical report,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 the interpretation of Health

로 상당히 높아진 이유가 단순히 중대재해 발생건수의 급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Ⅲ.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처벌사례

1. 법적 차이점

가.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배경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안전사고의 발생에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the Health and Safty at Work Act 1974)과 보통법(Common law)의 적용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위반 시에는 제33조에 의하여 법인이나 개인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사나 경영자 등의 동의 또는 묵인이나 과실로 인하여 법인의 의무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해당 이사나 경영담당자(any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similar officer of the body corporate or a person who was purporting to act in any such capacity)”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하여 보통법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개인 “중과실치사죄(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많은 사상자를 낸 Southall 철도사고¹⁹⁾처럼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and Safety Statistics 2021/22, 14면.

19) “Southall 사고는 1997년 9월 GWT(Great Western Trains)가 운영하는 고속 여객열차의 운전자가 시속 125마일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간선을 횡단하는 화물열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으며, 사고결과로 7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치상에 이르렀으며, 약 천만 파운드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 사고에 대하여 여객 열차가 빨간색 신호를 통과했는지 아니면 녹색 신호가 잘못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조사가 시작되었고, 보건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앞 선로에 있는 화물열차의 두 신호 경고에 운전자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운전원이 신호를 놓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가 ‘졸았을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동 열차에는 두 가지 안전 시스템이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사용했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나, 기본 자동 경고 시스템(AWS)과 보다 발전된 자동 열차 보호(ATP)가 있었지만, 운전원이 사용법을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AWS가 고장 났고 ATP가 꺼졌을 뿐만 아니라 보조운전원조차 탑승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운전원 개인의 독자적이거나 개별적인 과실이 아니라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보통법상으로는 법인의 관련 의무와 경영진의 의무는 분리된 것이고, 이사 등 경영자 개인의 의무란 개인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로서, 해당 의무위반에 대한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과실의 인정에는 개인의 관련의무 존재 - 의무위반 - 의무위반과 치사상결과 간의 상당한(substantial) 인과관계-위반이 제반 정황 하에 범죄에 이를 정도의 중과실이라는 일련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개인이 사고와 관련될 경우 모든 관여자의 의무위반의 총합으로 발생된 결과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법인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Southall 사건²⁰⁾ 역시 법인의 중과실치사죄에 관하여, 회사를 지배하는 자(‘controlling minds’)의 중과실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동일성이론으로 인하여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즉, 종업원은 단순한 손(hand)에 불과하므로 기업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기업대표자는 ‘controlling minds’에 해당하므로 그의 중과실 입증 있어야 철도회사라는 법인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¹⁾

이러한 동일성 이론에 의한 접근으로 인해 기업의 정신을 지배하는 자의 의무위반이 입증되어야만 기업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속적인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었고, 1997년 당시 집권당인 노동당은 관련 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2005년 3월 기업과실치사법의 공표가 이루어졌으며, 동 법안이 2006/7/20일 하원에 상정되어 26일 공포된 것이다.

나. 법제 및 적용상 차이점

영국의 동일성이론은 법인처벌의 근거로서 우리 법제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의 시스템의 실패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중과실치사라는 관습(형)법 위반에 기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GWT 기소는, 그것을 회사의 경영진의 중과실로 입증할 만큼 회사를 지배하는 자들(controlling minds)이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어서 실패하였다.” The Open University, 3.2 The history of corporate manslaughter prosecutions in the UK, <https://www.open.edu/openlearn/money-business/corporate-responsibility-industrial-incidents/content-section-3.2>

20) R. v. Great Western Trains Company Limited(1999년 7월 27일)

21) 동일성이론에 관하여는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12, 50-55면 참조.

하고 이처럼 동일성 이론의 한계가 기업과실치사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따라서 동일성이론은 법인처벌의 한계이자 기업과실치사법 제정의 근거이다. 이로써 경영자 개인 범죄에 종속함이 없이 법인의 구성 및 운영에의 의무위반이라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의 결과에 이르면 그 자체로서 완전한 기업의 범죄성립이 인정된다.

반면 기업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기업처벌의 특별규정인 양벌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책임주의 원칙을 근거로 위헌결정을 한 이후에 기업처벌은 반드시 기업의 선임·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영국은 영미법에 존재하는 유죄인정(Guilty Plea)에 의하여 감형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대재해에서 기업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음으로써, 실제 판결에 있어서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기업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검찰이 기업의 의무위반과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성 판단의 부담이 제거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은 즉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실인정에 있어서 핵심사항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인행위와 근로자사망사이에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증 판단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2021년 R v Wood Limited Treatment 사례²²⁾를 제외하고는 모두 1심(Crown Court)에서 종결되어서,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이 전무하다.

둘째, 유죄인정을 한 기업에게는 감형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하여, 법률상 ‘상한없는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무색할 정도로 형량의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업규모에 따라 4개로 벌금형의 구간을 나누고, 가중 및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 적용된 형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²³⁾ 물론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을 받은 후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규모의 기업에는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22) [2021] EWCA Crim 618 Case No: T20197350

<https://www.bailii.org/ew/cases/EWCA/Crim/2021/618.html>

23) 영국의 기업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혜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3면 이하 참조.

없었다.

2. 자회사 중대재해에 대한 모회사 처벌가능성: 2015년 CAV Aerospace Ltd 사건²⁴⁾

가. 사실관계

2013년 1월 26일 케임브리지 공항에 있는 작업장으로 배달된 금속 더미가 쓰러지면서 47세의 Paul Bowers 위를 덮쳐서 사망하였다. 조사결과 붕괴원인은 적재량 초과와 공간 부족에 따른 안전 높이 제한을 초과한 채 빌릿을 안전하지 않게 보관한 점이었다.²⁵⁾ CAV Aerospace는 더런 부 콘셋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회사이고, 그 자회사인 CAV Cambridge가 운영하는 현장인 케임브리지 공항에서 동 사고가 발생하였다. 모회사인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자회사인 케임브리지 부지 임대 등 자회사의 보증인 역할을 하였고, 자체 자금으로 부지의 기계를 구입하였다.²⁶⁾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자재 구매, 배송, 보관 관련 모든 운영과 관련한 결정은 모회사가 행한 것이었다고 한다. 조사결과 케임브리지의 관리자들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 3년 동안 CAV 에어로스페이스의 고위 경영진들과 함께 자재 더미의 추락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고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건 및 안전 이사는 MC Farlane에게 빌릿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강력한 용어로 경고했다. 가장 명백한 해결책들 중 일부는 비용 문제로 거부되었고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CAV 캠브리지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HSE는 6개의 거의 모든 실수가 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24) 본 사례는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년 연구보고서 중 발표자가 작성한 59-61면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5) R. v CAV Aerospace Ltd unreported 31 July 2015 (Central Crim Ct)

26) 자회사는 어떤 주문을 받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고, CAV 캠브리지의 유일한 이사는 가끔 회사 이메일을 무시하였고 모회사 이사도 종종 CAV 캠브리지의 총지배인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무시하여 왔다.

나. 재판결과: 모회사 기소 이유

검찰은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를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Sec. 3(1) 및 Sec. 33(1)로 기소하였다. 산업보건안전법 Sec. 3(1)이 적용된 이유는 위험이 모회사 자신의 직원이 아닌 자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이다.²⁷⁾

모회사인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죄인정을 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을 통해 28일이 이내에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으로 기업과실치사죄로 인한 벌금 600,000 파운드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400,000을 부과하였다. 또한 125,000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본 판결에서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가 벌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리 구조 면에서 과잉 재고의 문제는 CAV케임브리지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CAV에어로스페이스의 참여 없이는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없었다. 구매주문, 납품 등의 사항은 모회사가 책임지는 경영구조였고, 결과적으로 자회사는 발언권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자회사는 자체 재무부서가 없어서 회사의 재무운영은 지배기업인 모회사가 맡았고, 자회사의 의사 결정 독립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지배기업인 모회사와 종속기업인 자회사의 분리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둘째, 사건 이전에도 CAV에어로스페이스에 기록된 6건의 근접 누락보고가 있었고 그 중 어떠한 것도 조치나 위험성평가가 취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모회사인 CAV에어로스페이스가 “명백하고 명확하며 반복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모회사를 기소하였다.

셋째,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임상시험에서 개선 기준이 적용 가능한 기준에 미달하고 심각한 부상이 예상된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경고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를, 자신들이 CAV케임브리지 직원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그와 같은 안전의무는 자회사 책임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자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단순한 견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모회사(지배기업)가 자회사(종속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27) http://www.cps.gov.uk/news/latest_news/cav_aerospace_ltd_convicted_of_corporate_manslaughter/

지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²⁸⁾ 즉, 종속기업의 경영진과 종속기업의 운영상 또는 재무상 의사결정이 지배기업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재무지배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지배기업이 종속적 수준에서 작업조건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거나 제어 조치와 관련한 하자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것들이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기업이 보건과 안전 기능을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 모회사가 자회사와 같은 업종인지 여부, 모회사가 특정 산업의 보건 및 안전 관련하여 우수한지 여부, 모회사 수준과 자회사 수준의 이사들 사이에 중첩이 있는지 여부, 모회사가 그룹 단위로 적용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다. 양형고려요소

판사는 궁극적으로 비용절감을 사고 악화 요인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중요로서 위험방치의 긴 기간, 안전의무위반의 수준 및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한편 감경(완화) 요소로서는 수사협조, 시정조치, 사망자 가족에 대한 보험금 이상의 손해배상 지불, 우수한 안전 관련 기록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많은 완화 요인이 고려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회사가 새로운 근무 시스템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장 중징계는 해고)를 내렸다는 점과 근무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사망한 바우어스의 유족들에게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사망자와 그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나 기타 지급에 추가하여 지불하였다. 그리고 회사가 그 이전에는 아무런 사전 기소나 강제 조치를 받은 바 없이 양호한 보건 및 안전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점과 보건과 안전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고위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보건과 안전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점에 양형감경의 요소로 고려되었다.

다만 기업과실치사에 부과되는 양형위원회 지침에 따라 50만 파운드 미만이 될 수는

28) Burges Salmon, Parent company liable for safety breaches of its subsidiary, 2015/12, 1면 https://www.burges-salmon.com/-/media/files/publications/open-access/parent_company_liable_for_safety_breaches_of_its_subsidary.pdf

거의 없었고, 법원은 다만 회사의 규모가 큰 반면 당시로서 수익이 크지 못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 공표명령이나 시정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라. 시사점

최근 SPC 그룹의 계열사인 사니에서 끼임사고로 인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동 그룹 계열사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SPC 제빵 공장에서도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SPC 그룹이 아닌 그룹계열사 SPL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당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수사전담팀 구성을 통해 압수수색 진행 결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빵공장 공정의 기본적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찰은 송치 이후 10여개월이 지난 올해 8월에야 비로소 SPL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SPL 대표이사의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안전보건의무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등 세 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을 근거로 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는 위험작업 방지, 2인 1조 등 적절한 인원 배치 불이행 등을 근거로 하였다.²⁹⁾

그러나 동 사건에서 문제된 바는 SPC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검찰은 SPL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해당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및 사업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므로 그룹의 대표를 경영책임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자회사의 중대재해사건에 대하여 모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 판결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모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조계의 기준까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29) 매일노동뉴스, “강동석 SPL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2023/08/25,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66>

SPC 그룹의 경우 계열사에서 지난 4년간 치사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건수가 759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³⁰⁾, 계열사들은 독립적 재무구조와 경영판단권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타당한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의 지분과 투자가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독립경영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3. 단일의 중대재해에 대한 다수 기업의 처벌가능성: 2017년 Koseoglu Metal works Ltd 사건³¹⁾

가. 사실관계

Firat와 Ozgur Ozdil이 친구 Kadir Kose와 그의 회사 Koseoglu Metal Work를 고용하여 Ozdil Investments가 소유한 Ozdil House 창고의 지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산업보건안전청(HSE)와 Harlow District Council은 Ozdil Investments에게 수리 작업과 관련된 위험과 추락방지 그물망과 같은 안전 조치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Firat와 Ozgur Ozdil은 Kose와 Koseoglu Metal Work에게 그러한 예방 조치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³²⁾

그 결과, 2015년 63세의 Nikolai Valko가 Ozdil 건물 지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변색된 채광창을 밟은 후에 땅에 떨어졌고, 심각한 머리부상을 입은 후 이송되었으나 병원에서 사망하였다.³³⁾ 당시 채광창이 있는 지붕은 흙과 이끼로 덮여 있었고, 안전망이나 하네스, 안전모, 사다리 등도 없었다.

30) 뉴스로드, “사람목숨 바쳐 빵 굽나... SPC, 4년간 산재사고 759건”, 2023/9/6,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46>

31)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64-66면 인용.

32) Health and Safety Executive v Koseoglu Metal works Ltd, 19 May 2017 (Crown Ct (Chelmsford))

33) HSE, Defendant details - Koseoglu Metal Work Limited, https://resources.hse.gov.uk/convictions-history/defendant/defendant_details.asp?SF=DID&SV=4396286

나. 재판결과

Essex에 본사를 둔 부동산 회사인 Ozdil Investments Limited의 이사 Firat Ozdil과 Ozgur Ozdil과 건축 금속 세공 회사 Koseoglu Metal Work Limited의 단독 이사 Kadir Kose는 2015년 4월 Essex의 창고에서 Nikola Valkov가 사망한 후 산업보건안전법 Sec. 37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회사 Ozdil은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Sec. 3(1)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회사 Koseoglu는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Sec. 2(1)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016년 9월 첼름스 포드 크라운 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Koseoglu Metal Work는 유죄인정을 하였다. 동 회사의 이사 역시 유죄인정을 하였다. 반면 Ozdil Investments와 해당 이사는 범죄사실 인정을 거부하였다. 2017년 2월, 4주간의 재판 끝에 두 기업과 이사들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Ozdil Investments는 기업 과실 치사 범죄로 500,000 파운드, HSWA 위반에 대해 160,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55,115.34의 기소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Koseoglu Metal Work는 기업 과실치사 혐의로 300,000 파운드, HSWA 위반으로 100,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21,236의 기소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Ozdil Investments Limited의 이사 Firat Ozdil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Ozgur Ozdil은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Koseoglu Metal Work의 단독 이사 Kadir Kose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3명 모두 10년간 회사의 이사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다. 양형고려요소

법원은 철강계단 및 발코니와 같은 건축금속세공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Koseoglu 회사가 루핑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과 Kose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점 및 고용한 직원을 교육 없이 현장에 보낸 점을 확인하였다.³⁴⁾

34) British Safty Council, Safe Management, 2017/5/23, <https://www.britsafe.org/publications/safety-management-magazine/safety-management-magazine/2017/three-directors-jailed-over->

두 회사 모두 기업규모는 양형기준 2단계상 기업규모는 영세기업(Micro organisation)에 해당하며, 위반범주 카테고리는 A에 해당하였으므로 450,000 파운드가 시작지점이었다. 따라서 카테고리 범위는 £270,000 – £800,000 내에 있었다. 그러나 Ozdi의 벌금은 시작지점보다 높았지만 카테고리 범주 안에 있어서 양형기준에 부합하였다. 법원은 회사와 이사들이 산업안전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서류작업, 비계, 주행라인, 안전보드, 하네스 및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그들이 근로자 사망하였을 당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였다.

라. 시사점

하나의 중대재해 사고에 대하여는 특정 기업의 경영자 등의 책임을 고려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발주자와 도급인의 관계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지만 사업주나 법인 등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사례는 발주자는 부동산회사로써 직접 시공하는 도급 또는 용역회사와는 법인 자체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법인 모두에게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였다. 만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같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책임의 귀속을 판단한다면 관련 법인 모두에게 동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질적”이라 함은 동등하게 책임을 분담함이 확증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에만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문언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산업보건안전청과 지역법원은 부동산회사에게만 수리 작업과 관련된 위험과 추락방지 그물망과 같은 안전 조치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 법인까지도 안전의무위반에 의한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시공 법인이 아닌 도급(위탁)을 행한 법인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이행경고를 한 점, 안전조치의무 이행경고에 대한 위반의 책임을 부과한 점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서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주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대재

해처벌법의 비판 중 일부는 의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것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책임귀속자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³⁵⁾을 지적하나, 관련 감독기관이 구체적으로 의무를 사전에 적시하고 경고를 행함으로써 의무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형참사에 대한 기소의 부담: 2017년 Grenfell Tower 화재사건³⁶⁾

가. 사실관계

최근에 영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2017년 Grenfell Tower 화재사건의 경우, 72명이 해당 사건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9월 19일 런던의 23층짜리 그렌펠 타워는 화재로 전소하였고, 해당 화재를 조사하였던 경찰은 개인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뿐만 아니라 그렌펠 타워를 운영하던 기업조직에게 기업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⁷⁾

당시의 공개조사에 따르면 막을 수 없는 화재 확산의 핵심 원인은 당시 보수 공사 중에 타워의 외벽에 장착된 가연성 피복 시스템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의 의장을 맡았던 Martin Moore-Bick 판사에 따르면, 청문 당시 증인으로서는 보수공사의 주계약자인 개인 소유의 회사 Rydon Maintenance Ltd의 전·현직 직원들 및 피복재를 취급하는 하청업체인 Harley Facades Ltd, 해당 건물의 세입자들을 관리하던 Kensington and Chelsea Tenant Management Organisation (KCTMO) 등이었다. 증인들은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술한 그 어떤 것도 자신에 대한 기소를 촉진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하였다.³⁸⁾

35) 김영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21, 121면; 오대영, 앞의 논문, 342-344면 등.

36)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69-71면 인용.

37) In Grenfell Inquiry, U.K. Weighs 2 Types of Manslaughter Charge
<https://www.nytimes.com/2017/09/19/world/europe/uk-grenfell-manslaughter.html>

38) REUTERS, Witnesses seek protection from charges over London's deadly Grenfell fire, 2020/1/29,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fire-grenfell-idUSKBN1ZS1TS>

해당 건물은 켄싱턴 자치구와 첼시 자치구가 소유한 사회주택으로, 일부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인종차별을 받는 저소득층 공동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무관심이 비극에 일조하였으며, 건물에 화재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경고가 무시되었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조사 경과

2021년 12월 경찰은 해당 타워 보수의 중심이 된 최대 36개 업체의 역할을 조사하고, 자연성 외장재와 단열재의 설치 등에 있어서 인과성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화재와 관련하여 범죄혐의를 고려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어지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³⁹⁾ 현재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문과 조사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그린펠 타워 조사팀은 2023년에도 매월 조사내용을 공식적으로 발간하고 있다.⁴⁰⁾

2022년 4월 이후에는 화재 직후 지방 및 중앙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는 바, 중대재해 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기관 역시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대상이다.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이미 2단계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고, 1단계에서는 20,784건의 문서, 2단계에서는 299,641건의 문서를 공개하여 현재 320,425개의 관련 문서들이 해당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⁴¹⁾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청문회 후의 지원 조치로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다. 시사점

동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조사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조사내용과 결과를 매월 단위로 업로드 함으로써 사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조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조사가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

39) BBC, Grenfell Tower survivors say criminal charges are taking too long, 2021/12/14
<https://www.bbc.com/news/uk-england-london-59657356>

40) Grenfell Tower Inquiry, <https://www.grenfelltowerinquiry.org.uk/news/march-2022-newsletter>

41) Grenfell Tower Inquiry, September 2023 Newsletter, 2023/10/3일자, <https://www.grenfelltowerinquiry.org.uk/news/september-2023-newsletter>

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경중이 없음을 드러냄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조사방법과 정보공개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할수록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사건의 중대성은 희석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건조사 홈페이지를 사건별로 운영하고 해당 조사내용을 공개한다면,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사법불신을 상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V.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과 적용확대의 타당성

1. 법적 성격의 문제

가. 형사특별법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서 법명상으로는 처벌에 관한 형사특별법과 같은 외관을 가진다. 이로 인하여 동법의 성질에 관하여 형사특별법인지 또는 행정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선 행정법으로 보는 견해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로써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이 생명·신체의 보호에 있으므로 본질상 안전·보건에 관한 법이라고 보거나⁴²⁾ 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 방지가 동법의 목적이라고 본다.⁴³⁾

형사특별법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거나 강력한 처벌을 입법목적으로 한다⁴⁴⁾고 본다.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처벌법이고 형법이라고 하거

42) 오대영, 앞의 논문, 327면.

43) 김영국, 앞의 논문, 113면.

44) 김진권/신만중,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방안”,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57면.

나⁴⁵⁾ 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거나⁴⁶⁾ 또는 다른 언급 없이 형법상 책임주의를 근간으로 동법을 비판하기도 한다.⁴⁷⁾

입법된 법률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동법의 입법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관련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으로 폐기 통합되면서, 제안이유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처벌은 수단일 뿐이고 궁극적 목적은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동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제9조는 해당 의무이행자의 구체적인 이행의무를 열거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이에 대한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3조는 조치의무 등의 이행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처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형사특별법이 아닌 행정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여부

동법상 처벌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과실범설과 결과적 가중범설 및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우선, 과실범설의 입장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의 위반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상관없으며,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과실범이라고 본다. 그리고 과실범으로 볼 때 의무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⁴⁸⁾ 또 다른 입장에서는 치사상의 결과발생과 관련한 행위자의 과실책임이 핵심이며, 법원이 산업재해를 과실범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⁴⁹⁾

45) 박채은, 앞의 논문, 117면.

46) 정신교,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법이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23, 78면.

47)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1, 218면.

48)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노동법연구 제51호, 2021, 10면 이하.

49)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한국사회법학회, 2021, 109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 견해는 경영자의 의무위반행위를 고의범으로 보고,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로 인한 치사상의 중한 결과발생이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구조를 언급한다.⁵⁰⁾ 이에 따르면 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의무위반은 고의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은 의무위반 자체가 아니라고 보면서 이처럼 고의에 의한 의무위반을 고의범으로 가정하게 된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전형적으로 결과적 가중범 형태를 띠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이 중한 결과의 발생만을 처벌하므로 결과적 가중범 구조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특수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본다.⁵¹⁾ 특히 이 견해는 과실범설에 대한 비판점으로 첫째 본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과실범 법정형보다 지나치게 높은 점, 둘째, 과실범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상죄도 과실범으로 보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은 고의범만으로 한정된다는 점 및 그 결과 의무위반이 과실이면 치사상에 대하여 일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의 논리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되고 그와 같은 의무위반은 중대재해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이 전형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본다.

우선 특수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는 견해가 과실범에 대하여 비판하는 면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옳지 않다. 첫째, 일반 형법상 과실범의 형량은 형법이 규범에 반하는 심정적 반가치 태도의 형성에 대한 법적 비난이므로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므로 형량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형법상으로도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중한 결과에 대한 법정형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과의 법정형의 차이를 논거로 할 수는 없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은 처벌규정이 존재하므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고의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 자체가 범죄이고, 범죄성립은 고의범이 원칙이며,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

면; 정신교, 앞의 논문, 82면.

50) 박채은, 앞의 논문, 123-125면.

51) 김재윤, 앞의 논문, 204-205면.

실범처벌규정을 독립적으로 두어야만 하며 규정이 없는 한 불가벌이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의무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 위반이 반드시 고의범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범죄인 때에만 고의범 처벌이 기본원칙이 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의무위반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셋째, 의무위반을 고의 범으로만 한정하게 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어렵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고의여부보다 의무위반과 치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판단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 형법은 독일과 달리 과실의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위반에 과실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이는 일반 형법이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과실범의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전제조건은 기본범죄의 존재이다. 따라서 기본범죄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컨대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일반적으로 기수이거나 미수임을 불문하나 이때의 미수란 미수범처벌규정이 존재하고 미수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를 예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낙태죄에 있어서 낙태치사상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낙태죄는 기수에 이르러야 하고, 낙태가 미수가 되는 때에는 기본범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낙태치사상죄가 아닌 과실치사상죄라고 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본범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상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는 것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치사상죄는 과실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과실범이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앞서 살펴본 과실범설과는 그 논거를 달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자체를 과실범으로 볼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닌 의무위반을 반드시 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즉, 의무위반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관계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되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중대한 부주의(gross breach)를 요구한다. 즉, 고

의뿐만 아니라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도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한다.

의무위반을 고의로 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고의·과실 모두 포함시키는 이유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위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위반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사업장의 의무이행자가 실무자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과 같이 해당 사업의 대표이자 총괄판단권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이 규정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총괄대표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점에 있기 때문이다.

2. 행위 주체의 해석

가.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상 행위주체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대상인 단체(organisation)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이에 준하는 조직이나 경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를 모두 포괄한다.

동법 제1조는 그 기업의 활동이 경영자(senior management)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위반에 있어서 상당한(substantial) 요소일 것으로 요구하며, 고위 관리직이란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관리되고 조직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 관리나 조직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정의된다(동조 제4항(c)). 또한 조직에는 이익 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등도 포함된다.

기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의무를 기업경영자가 하위 직급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경영자가 면책대상이 되는가 역시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발간한 “기업과실치사법의 이해(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에 따르면 그와 같은 책임의 부적절한 위험도 경영자의 관리불이행에 의한 기업과실치사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⁵²⁾

자회사와 모회사, 하도급업체와 같이 그룹구조이거나 다수의 회사가 관여하는 경우

검찰은 책임있는 회사가 기소되도록 책임분담을 식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각 조직 내에서 개별적으로 사망에 기여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룹 내 둘 이상의 회사가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유사하게 주계약자와 하도급자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 임대인이 소유하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시설관리회사가 관리하는 건물, 사이트 관리와 서비스제공 및 운영이 모두 별도의 회사에서 제공되는 공항 등도 이와 같이 평가된다.⁵³⁾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행위주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며, 명확성 원칙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동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또는”의 의미일 것이다. 즉, “또는”으로 연결되는 가와 나를 병렬적,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가와 나가 서로 다른 특정인이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귀속, 즉 누가 범죄자인가를 확정함에 있어서 가와 나 중에 행위주체를 확정하는 문제가 된다.

우선 병렬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중대재해치사상죄에 가와 나가 동시에 행위주체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단일적 또는 이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가와 나가 모두 원인된 의무위반을 하였다면 양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당연한 귀결이다.

선택적으로 보는 견해는 ‘실질적’ 책임귀속자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단일의 중대재해치사상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하나로 보고 가와 나 중에서 누구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인지 여부는 의무의 내용과 인과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라고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안전보건의무를 특정 담당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만일 안전보건의무의 완전한 이전이 부정된다면 나의 존재가 거의 치사상

52) Ministry of Justice, 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 2007, 3면 이하.

53) 검찰청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corporate-manslaughter>

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실질적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는 선택적으로 보는 견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실질적이란 나의 선임의 유효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 판단, 가에 대한 나의 보고의무 여부, 기업 안전보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누가 행위주체가 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와 나 모두를 행위주체로 볼 수도 있다고 본다.⁵⁴⁾

중첩적으로 본다면, 단일의 중대재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가와 나가 모두 존재할 경우 안전보건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과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들 모두를 행위주체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결국은 병렬적이거나 선택적, 또는 실질적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들이 모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논거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여진다. 즉, 인과성 판단의 조건들은 사실판단의 문제이고 이는 가 이외에 나라는 의무귀속자의 존재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무의 존재와 의무의 귀속방식이며 의무의 귀속여부 등으로서 그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예컨대, 사실적 판단이라고 보는 바에 의한 예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양벌규정의 해석

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은 중대재해발생에 대하여 법인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적용한다.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만을 행위주체로 하므로,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으로 개인 기업경영자가 처벌될 여지는 없다. 기업경영자는 기업과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의 공범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소위 ‘control mind’가

54) 김재윤, 앞의 논문, 211면.

법인의 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동의나 묵인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⁵⁵⁾에 의하여 해당 이사나 경영담당자(any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similar officer of the body corporate or a person who was purporting to act in any such capacity)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이사 등이 법률상 필수적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또는 제3조 위반에 따른 제33조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사 등 개인은 이를 묵인하거나 동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의하여 유죄가 성립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주체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양벌규정이라는 특별규정의 존재만이 법인처벌의 가능성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법인 처벌에 관한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단서를 통해 법인의 독자적 책임으로서 선임·감독의무를 전제로 할 것을 요청한 이후에, 모든 양벌규정에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행위자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에게 의무해태가 있을 경우 양벌규정을 통한 행위자 종속적인 법인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하면서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⁵⁶⁾한 것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논거 하에 선임·감독의무라는 독자적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바로 양벌규정이라고 함으로써, 엄격하게 행위자 개인의 불법성과 법인의 불법성을 구분하였다. 즉, 양벌규정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이란 “종업원”과 관련한 법인 책임의 문제인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와는 관련이 없다.

55) 산업안전보건법 제37는 “법인에 의하여 범해진 관련 법령 조항에 따른 범죄가 그 단체의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 자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저질러 졌거나 또는 그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도 그 범죄로 유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6) 헌재결 2009. 7. 30. 2008헌가14, 관례결 21-2상, 87면.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업원 등의 범죄가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종업원 등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 역시 ‘종업원 등의 행위’와 관련된 사정일 뿐, 영업주 자신의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⁵⁷⁾이라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기업의 대표자의 행위가 기업 그 자체의 행위로서 종업원이 행한 행위와 달리 평가된다면, 양벌규정에서의 선임·감독의무가 대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업대표자의 행위는 기업 자체의 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기업의 선임·감독의무란 순환논리와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논거 하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사업대표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라고 할 경우, 사업대표자는 기업과 동일시되므로 양벌규정에 있어서 선임·감독의무위반 여부는 해석상 안전보건업무담당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의 양벌규정에 있어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선임·감독의무 이행에 의한 면책은 대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결과, 대표자의 위반행위는 기업의 위반행위가 되어 예외 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면 안전보건담당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업에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임·감독의무 해태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의 문제

가. 영국의 사례

영국의 지난 기업과실치사법 적용과 관련하여 주요 결함이라고 지적되는 바는 대기업 기소 실패와 상한 없는 벌금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57) 헌재결 2010. 7. 29. 2009헌가25등, 판례집 22-2상, 183-184면.

첫째, 지금까지 기업과실치사법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된 모든 기업들은 과실치사라는 보통법에 따라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중소기업들이다. 그리고 기업과실치사법이 표면적으로 구상하였던 거대하고 복잡한 기업들은 지금까지 배제되었다. 이는 모든 유죄 판결이 단일 사망자를 포함한 범죄와 관련이 있는 반면, 기업과실치사법의 이면에 있는 주요 의도는 여러 개의 사망 사건을 비롯한 대형 사고를 포괄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실패라고 본다.

둘째, 법률상 법정형인 “상한 없는 벌금”과 달리 판결선고 당시 부과된 벌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떠한 기업이든 벌금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파산일 것이다. 2015년 양형기준에서는 사업의 중단이 “허용되는 결과(acceptable consequence)”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벌금 납부 시간의 유예를 허용하거나 분할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⁵⁸⁾에서 법원은 “회사가 청산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판단에 따르면 이는 심각한 의무위반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일”⁵⁹⁾이라고 판결하였다.

실제로 법원이 기업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결할 때에는 이미 의무위반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그와 같은 파산에 이르게 하는 벌금액을 부과할 것인가는 무고한 노동자들의 잠재적인 피해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몇 년간의 벌금 납부를 선고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양형재량과 관련하여 벌금의 분할납부는 다수의 판결에서 회사의 청산(폐업) 여부를 고려하여 판결되어 왔다. 예컨대, 2013년의 Murray & son Ltd 사건⁶⁰⁾에서도 Weir 판사는 “제출된 계정과 공인회계사의 증거 모두 회사가 번창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주로 이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 고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모든 벌금은 징벌적이어야 하고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해야 한다”⁶¹⁾

58)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2012] 1 Cr. App. R. (S.) 26

59) “the fact that the company would be put into liquidation would be unfortunate, but in [their] judgment, this was unavoidable and inevitable given the serious breach of duty committed”

60) R. v J Murray & Son Ltd [2013] NICC 15.

61) “careful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accounts presented and the evidence of the Chartered Accountant both indicate that the company is not flourishing and I have no wish to see it forced out of business, principally because it is providing employment in a rural area in these

고 판시하였다. 이 때문에 징벌적인 벌금액을 부과하되, 분할납부를 통해 회사의 폐업을 막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동 판결에서도 매년 2만 파운드의 벌금을 5년간 분할납부할 것을 선고하였다. 분할납부의 선고시 회사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는 장래 무고한 직원의 해고될 가능성을 벌금 산정에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이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근로자의 직업상실을 벌금액 산정에 상당한 수준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우 영세한 상태여서, 재판과정 또는 벌금확정 이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⁶²⁾

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업장 확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시행일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11일의 최초 발의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부칙으로 정하였으나, 2020년 12월의 발의안에서 비로소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⁶³⁾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후 1년을, 그리고 그 미만의 사업장은 공포 후 4년을 시행시점으로 차별화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발의에서 비로소 현행법과 동일한 부칙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발의안에서도 시행시점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나 이유를 제시한 바는 없다. 다만, 박범계 등의 발의안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확장한다고 한 바로 미루어보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동법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마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difficult times. Nonetheless the guidelines require that any fine must be punitive and sufficient to have an impact on the company”

62) 이데일리, “영국판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기업 절반 부도…영세 중소기업 처벌 물러”, 2022/7/5,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847046632391568&mediaCodeNo=257&utm_source=https://www.google.com/

63) 박범계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2020/12/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향후 부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인 이상은 노사관계법의 적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확대적용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지 아니면 반대로 영세기업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경제저하의 결과만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팽팽한 논쟁이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칙상의 시행일을 2년간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기도 하다.⁶⁴⁾

2021년 기준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사망건수는 567건으로 사망만인율은 1.76으로 전체 사망만인율 1.07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사업장 규모를 단위별로 구분할 때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단순 합계는 792명으로 해당 구간의 사망만인율은 0.94로 전체 사망만인율 대비 낮은 편에 해당한다.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500-999인으로 1.71에 이르며, 5인 이상 70인 미만 구간보다 약 1.8배 높은 사망비율을 나타낸다. 물론 단순 사망재해와 중대재해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망만인율의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율을 명확하게 추론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표가 주는 행간의 의미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

이미 제정된 법의 시행유예 여부는 전적으로 정책적 판단이다. 이미 법률은 대다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있고, 시행 이후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12.9% 감소되었다.⁶⁵⁾ 다만, 1분기 사망사고에 있어서 50인 이상 사업장이 49명(48건)으로서 지난 해 68명(56건)의 사망보다 사고건수 자체도 15%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 76건의 사망사고로 7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또한 지난해 대비 사망자수는 동일하고 사건은 단지 1건 감소하였을 뿐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장수 대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의 22.7%에 해당한다. 반면 50인 이상의 사업장 수는 전체 대비 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5인 미만의 극영세 사업주에 해당한다.⁶⁶⁾ 사업장수 대비 중대재해 발생건수를 고려한다면, 50인 미만 사

64) 안전신문,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제화 첫발”, 2023/9/7,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59>; 세상을 바꾼 시민언론 민들레,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유예 연장” 제계 편든 정부“, 2023/10/1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1>

65)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2023/5/15, 1면.

66) KOSIS, “규모별·지역별 사업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총 사업장 개수는 2,195,391개이고, 5인

업장의 경우 보건·안전의무로부터의 해방이 재해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 주로 1-2인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과실치사법 적용이 절반 이상의 기업파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및 지역경제를 위하여 처벌대상 기업에게 분할납부를 통한 기업파산 회피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발생건수만으로 유예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당부당의 결론에 이르기보다는 정책결정에서 보다 많은 고려요소들이 분석되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V. 나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대표자 처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전 예방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정 이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법적 성격, 구성요건의 명확성, 의무범위의 구체성, 처벌의 과중문제 등 끊임없는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다소간의 중대재해사고가 감소하였다면 법의 제정 목적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니와 반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기도 모호하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15년이나 앞서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여 온 영국에서조차 동법의 입법목적의 실현여부에 대하여는 비판이 더욱 크다.

여기에서는 우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과 영국의 중대재해 발생 추이와 특징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행위주체로서 기업, 자회사와 모회사의 책임귀속 문제, 단일 사고에 대한 다수 기업의 처벌가능성 등에 관한 영국의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 해석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이 형사특별법이 아닌 안전·보건에 관한 행정법이라는 점, 행위주체로서 기업의 대표자 해석, 양벌규정의 해석문제와 50인 미만 사업장예의 확대적용 문제 등을 영국사

미만 사업장수는 1,667,037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수는 499,762개, 50인 이상 사업장 수는 총 28,692개이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1>

례와 비교하여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규범의 범위를 확장시키지만, 예측불가능한 위험요소의 증대는 관련 법으로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범위는 넓어지고, 안전확충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경제적 규모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헌법이 근로를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유지에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는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거부권’이 있다.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OECD 국가 중 국가산재사망률 1위의 민낯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지막 희망카드라면, 해당 카드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2023/5/15
-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결과 발표, 2023/1/19
-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한국사회법학회, 2021
- 김영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21
- 김재윤,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 형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2/9
- 김진권/신만중,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방안”,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 김혜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6
-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 박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처벌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56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12
-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12
- 송인택 외 4인, 중대재해처벌법해설과 대응, 박영사, 2022
- 오대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법조 제71권 제4호, 법조협회, 2022/8
-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2권 제4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1

임우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20/12/2

정신교,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법이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23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조흡학,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고소”, 노동법논총 제 5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12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노동법연구 제51호, 2021

통계청,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2021

[외국문헌]

British Safty Council, Safe Management, 2017/5/23, <https://www.britsafe.org/publications/safety-management-magazine/safety-management-magazine/2017/three-directors-jailed-over-workers-roof-fall-death/>

Burges Salmon, Parent company liable for safety breaches of its subsidiary, 2015/12, https://www.burges-salmon.com/-/media/files/publications/open-access/parent_company_liable_for_safety_breaches_of_its_subsiary.pdf

Grenfell Tower Inquiry, <https://www.grenfelltowerinquiry.org.uk/news/march-2022-newsletter>

Grenfell Tower Inquiry, September 2023 Newsletter, 2023/10/3, <https://www.grenfelltowerinquiry.org.uk/news/september-2023-newsletter>

HSE, Defendant details - Koseoglu Metal Work Limited, https://resources.hse.gov.uk/convictions-history/defendant/defendant_details.asp?SF=DID&SV=4396286

HSE, Technical report,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 the interpretation of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2021/22, HSE, 2022/11/23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un, 2023, Annual statistics, HSE,

2023/7/6

In Grenfell Inquiry, U.K. Weighs 2 Types of Manslaughter Charge,

<https://www.nytimes.com/2017/09/19/world/europe/uk-grenfell-manslaughter.html>

Jocelyn Ledward, Corporate manslaughter: more and larger companies are due to pay the penalty, https://www.qebholliswhiteman.co.uk/cms/document/nfdc_corporate_manslaughter.pdf

Ministry of Justice, 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 2007

Number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in Great Britain from 1974 to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2272/fatal-injuries-at-work-great-britain-by-employment-y-on-y/>

The Open University, 3.2 The history of corporate manslaughter prosecutions in the UK, <https://www.open.edu/openlearn/money-business/corporate-responsibility-industrial-incidents/content-section-3.2>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of UK -

Kim, Hyeky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nacted in 2021 is about to be expanded and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the legal and theoretical problems and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is Act. In other words, not only is there criticism on the legal nature of this law, the clarity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the concreteness of the scope of obligations, and the fact that the punishment is too heavy, but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serious accidents have actually decreased after implementation.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has failed, but on the contrar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has been achieved. However, even in the UK, which has implemented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Murder Act 15 years before Korea, stronger criticism has continued on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is realiz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Negligence Act in the UK and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serious accidents in the UK were analyz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 looked at the cases of the UK and court rulings on the issue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companies, subsidiaries and parent companies, and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for multiple companies for a single accident. And based on this, we tried to analyze what could be borrow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h.D. in Law

Accident Punishment Act. Finally, the legal natur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n administrative law on safety and health, not a special criminal law, and the meaning of a company's representative as an act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and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to workplac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were compared to the UK case.

The rapid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expands the scope of norms required for industrial accidents, but the increase in unpredictable risk factors exceeds the limit that all relevant laws can cover. As a result, it is inevitable that the scope of obligations required by companies will be widened, and the burden on companies will increase due to the scale of human and material economy invested in safety expansion. However, the recognition that industrial development is possible only after securing the safety of workers must be established.

❖ Key words: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senior management's gross breach of duty of care, serious accid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 business owner,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Joint Penalty Provisions